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13
----------	--------

제출년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유재수, 이지화, 박은정
최진호, 현옥순, 설호영
김진숙, 황은화, 박은경
의원(9인)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학습권 보장, 교육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대상(안 제3조 ~ 안 제4조)
-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7조)
-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안 제8조)
-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9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붙임 1】 개정조례안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문해교육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
2.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AI·디지털 기술·기기 활용프로그램 등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운영

3. 건강, 안전, 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운영
4. 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활동 지원 사업
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6.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문해교육을 위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평생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을 “성인 문해교육”으로 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